

##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수산업법 개정공포의 의미

정부는 지난 8월 1일,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농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법률 제4, 250호) 하였으며, 또한 디수 어민에 대한 혜택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업법의 개정, 공포(법률 제4, 252호)도 함께 실시하였다.

다음은 이들 두법의 개정 의미와 개정내용을 요약, 풀이한 것으로 농어민은 물론 이들과 불기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食品人們에게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를 알리고자 농림수산부 홍보문안 全文을 게재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농어민에게 주는 혜택은?

## 왜 개정했나?

### 지금까지 서리·우박·냉해·적조현상 피해시 지원근거 없었음

-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자주 발생되고 있는 서리·우박·냉해 및 동해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이상조류(異常潮流)·적조현상(赤潮現象) 등에 의한 수산양식물의 피해에 대하여는 법적지원 근거가 없었음.
- 이들 법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재해가 발생될 때에는 정부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지원해 왔으나 미흡한 경우도 많지 않았음.

### 농어업 재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농어업 재해는 기본적으로 재해보험제도가 바람직하나
  - 현재로서는 농민의 참여도가 낮고
  - 보험료 부담의 과중 등으로 도상연습중에 있어
  - 이 제도를 실시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
- 우선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지원이 제외되었던 서리·우박·냉해·동해 및 이상조류·적조현상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농어민의 생계유지와 다음해 영농·영어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내용

### 풍수해대책법에서 지원이 제외된 농어업재해에도 지원

- 서리·우박·냉해 및 동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이상조류(異常潮流)나 적조현상(赤潮現象)에 의한 수산양식물 피해
- 시설물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

### 보조 및 지원방법과 내용은

- 재해의 피해 정도와 영농(營農)·영어(營漁) 규모에 따라
  - 농약대, 대파대(종묘대+비료대), 치어대 보조
  -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면제, 영농·영어자금 회수연기 및 그 이자 감면
  - 생계가 어려운 농어가에 대하여는 이재민구호와 생계비 보조
  - 수산양식물의 경우 죽은 양식물 철거에 따른 철거비 지원
  - '90. 1. 1일 이후 발생한 서리 및 우박피해도 이 법에 따라 소급지원

## 농어업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농업 및 어업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피해조사 및 지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음.

## 이 법의 개정으로 피해 농어민이 받는 실제 혜택은?

-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작물과 수산양식물의 재해시 정부에서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액수는 연간 500~1,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수산업법이 어민에게 주는 혜택은?

### 왜 개정했나?

##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적 뒷바침이 미흡하였음

- 대기업이나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과다한 어장을 점유함으로써 어촌계 등 다수 연안어민의 소득증대에 차질
- 대규모 매립·간척사업의 확대 등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제도가 미흡하여 분쟁 빈발
- 어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다수어민의 권익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정한 것임.

## 개정내용

### 다수 연안어민의 어장이용기회 확대

- 마을앞 어장은 어촌계에 우선 면허
- 어장 소유면적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특정인의 과다한 어장이용을 제한할 것임.

### 어민의 권리보호

- 공익사업으로 어업피해 발생시 면허어업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것을 허가·신고 어업도 보상토록 함.

### 어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 어촌계 어장에 유료낚시터 운영으로 소득원 개발
- 월동장 또는 월하장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수온에 따라 양식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어업의 민주화와 권한의 위임

- 시·도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어민대표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민의 의견을 일선 수산행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토록 함.
-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대한 수산청장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의 어업허가처 분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